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04일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고, 2019년 11월 0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 단서 상 점용료 면제기준 요금을 현실화하여 예산낭비를 없애고 업무담당자의 소액 연체관련 불필요한 부수업무를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3조제1항 단서 중 “600원”을 “2,000원”으로 개정.

3. 검토의견

○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단서 상 점용료 면제기준인 600원은 1997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현재 보통우표 가격 380원 및 미납 시

여러 차례 독촉장 발부 우편 요금을 산정해 볼 때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를 초래하므로

현실에 맞는 면제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제3조제1항 단서 중 “600원”을 “2,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관련법령]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6.8.5.] [강원도조례 제4060호, 2016.8.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1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해당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 등을 별지 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등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지방하천 및 영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료등을 납부한 날(분납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8.5.>

제8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와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매 분기말로 결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2] <개정 2017. 9. 2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호안·물양장(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船架臺)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m ³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p>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 m³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p>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146^2 \times 60}$ <p>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m/sec)}}{146^2 \times 60}$</p>
<p>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p>	<p>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p>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p> <p>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p>
<p>5. 식물의 재배 또는 벌</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p>

채를 위한 점용·사용	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³)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

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월할(月割)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